

## ●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-304호

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2025. 8. 7. 시행) 사항을 반영하여 「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」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3월 26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###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전부 개정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2025. 8. 7. 시행)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절차를 정하는 등 화학물질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자(이하 “담당자”라 한다)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신설로 기존 영업허가의 의무와 특례 사항 등을 준용하여 담당자의 민원 업무 처리절차 개정(제2장제3호부터 제8호까지 등)
- 나. 영업허가로 관리되던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영업신고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(제2장제9호 등)
- 다. 영업허가로 관리되던 제한물질이 허가신고 대상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(제3장제4호 등)
- 라. 기타 업무별 처리기준 수록(제4장 등)

#### 3. 의견제출 방법

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(화학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 사유

- 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,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
  - 전화 044-201-6836, 팩스 044-201-6830
  - 전자우편 : je1895@korea.kr
  -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(www.epople.go.kr)

- 4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(www.mcee.go.kr, 법령/정책 → 법령정보 → 입법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